

##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Modern Applicability of Jubilee Law - Focused on Basic Income

조혜신 (Hye-Shin Cho)\*

#### Abstract

Today, we cannot but turn our eyes to the Jubilee law of the Bible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our society to face situations such as unemployment, debt, poverty, exploitation. However, I think it is time for us to find a way to implement the idea of the Jubilee law in our laws and institutions more effectively and in a more adequate way by adopting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past in applying this Jubilee law to reality. The norm-addressee of Jubilee law is limited to the Israelite covenant community, and the legitimacy and effect of the law is fully secur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m-maker and the norm-addressee,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d and the Israelite covenant community. In this respect, attempts to universalize the Jubilee law only in its content are bound to have limitations, and thus, the spirit of the Jubilee law can still be meaningful today, only when applying, in addition to its contents, the principles of relationship and community responsibility, which are the premise of this norm. The logical consequence of the earlier discussion of seeking the contact between the Jubilee law and modern law is that there is not much room for contact between the two. Rather, considering the message given to the world of today by the Jubilee Law, I think the contact is the “restoration of lost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will refer to the totality of the whole relationship that human beings make with other human beings, the family, the region, the nation, and various levels of community, nature, and ultimately Creator God. And there will be a modern significance of the Jubilee Law in making progress in the

---

\*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hyeshin@handong.edu

2018년 08월 08일 접수, 09월 10일 최종수정, 09월 16일 게재확정

direction of reviving the relationship of care and responsibility.

As the basic income system challenge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legal system, it is obvious that it mirrors the Jubilee Law in terms of its fundamental and reformatory character of imagination. In other words, the basic income system is likely to be an attempt to systematically restore the community solidarity among members law and the relativity of ownership to shared assets of human beings, making it worthy of discussion and reflection. Of course, i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Jubilee Law and the Modern Law is obvious. Especi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income does not keep pace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rights and duties of 'labor', and furthermore, particularly with the work ethics of Christian Reformers that still have a profound influence to this day. This could also be a part of the difficulty of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the Jubilee Law. However, by thoroughly examining social and economic norms based on the Bible's genuine teachings, and by continuously seeking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is era, I hope that we can find a direction for Christian practice.

**Key Words** : Jubilee law, modern law, Pentateuch, covenant, land ownership, basic income

이 논문은 한동대학교 2018년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I. 서론

한국의 교계와 신학계에 있어서 '희년'은 지속적인 관심의 주제였으며,<sup>1)</sup>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이를테면 분단과 통일, 빈부격차의 극대화, 실업, 부채, 부동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다문화화, 인권 등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그 해결 혹은 회복을 위한 전망을 기대하게 하는 이른바 '사회적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기능해 왔다(양희승, 2016). 특히 성경의 희년제도는 '법' 혹은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를 '이상적 모형'으로 삼아 현실의 법과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교회의 역사 내내 꾸준히 이어져왔다(남기엽, 2012: 259).

성경의 고유한 제도로부터 각종 사회적 문제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

1) 이러한 희년법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은 '1980년대 후반기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장진광, 1994: 39).

위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현하는 일에 부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목표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특히 회년제도를 현실의 법과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제기되는 가장 빈번한 의문은 바로 그 ‘실현가능성’이다. 일찍이 19세기 후반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sup>2)</sup>을 통하여 회년법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토지제도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토지단일세’를 주창하였다. 하지만 이 대안 자체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혁명이 아닌 이상 법과 제도의 개선은 기왕의 것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구성원의 저항과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법 및 제도와 괴리가 매우 큰 대안은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비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록 그것이 성경에 전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 부채, 빈곤, 착취 등과 같은 경제적 질곡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건대, 이를 타개할 영감의 원천으로서 성경의 회년법에 다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회년법을 현실의 제도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회년법의 정신과 원리,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어야 할 맥락이 되는 ‘근대법(modern law)’<sup>3)</sup>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회년법과 근대법은 그 사상적,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날 국가, 사회, 시장의 제도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근대법의 맥락에 회년법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지, 그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의 본질 및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대법과 그 현대적 수정원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

2) Henry Georgy (1981). *Progress and Poverty -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3) ‘근대법(modern law)’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대법은 19세기 ‘근대국가’와 함께 탄생한 것인데,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국가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근대헌법, 근대사법, 근대형법 등 오늘날 법체계의 근간을 정초하였다.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과제를 희년법의 정신과 원리를 부분적으로나마 담지하고 있는 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시론(試論)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이지만,<sup>4)</sup>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지나친 상상으로 여겨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 상상에 참여하는 이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국가, 주, 도시, 마을 단위로 기본소득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의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실로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희년법의 원리 혹은 정신을 현실의 제도로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희년법의 의의 및 내용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의 구성원리라는 측면에서 희년법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 즉 ‘관계성(關係性)’이 전제되어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어서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희년법과 근대법의 전제를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두 법 사이에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의, 특히 그 성경적·윤리적 정당성을 희년법의 원리 및 정신에 비추어 논함으로써, 희년법적 실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관계성

### 1. 희년법의 의의

희년법은 구약성경 뿐 아니라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4) 기본소득의 개념요소들이 비교적 온전하게 갖추어진 논의는 18세기 영국의 혁명적 자유주의 사상가인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박형준, 2018: 41).

나라의 통치질서'를 설명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고, 모세오경의 율법, 예언서, 사복음서, 바울서신 등에 걸쳐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사야 61장 1~2절은 오경의 희년법을 그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구약의 희년 사상을 신약적 메시지로 발전시켜 나가 는 핵심 본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장성길, 2012: 97). 하지만 예언서의 곳곳에서<sup>5)</sup> 발견되는 희년의 흔적은 오히려 그 정신이 망각되고 간과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법의 핵심사상,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될 수 없다는 사상은 끈질기게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 1~19절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다.<sup>6)</sup> 무엇보다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희년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나사렛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누가복음 4:18~19이다. 희년 선포의 세 가지 효과인 노예해방, 부채탕감, 토지반환이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점에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누가복음의 나사렛 선언은 희년의 선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본고에서는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의 본문을 중심으로 희년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인데, 먼저 희년법 관련 본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이다. 20장의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여 23장에 이르는 이른바 '언약법전'에서 희년법과 관련된 부분은 21장 2~11절, 22장 25~27절, 23장 10~11절 등이다. 각각 빚으로 인한 종에 관한 규례, 이자 금지에 관한 규례, 휴경년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sup>8)</sup> 먼저 21장 2~11절에서는, 채무변제 불능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팔린 남성 노예의 해방과 첩이나 아내의 신분으로 팔린 '아마'<sup>9)</sup>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다. 22장 25~27절에서는 가난한 형제에게는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3장 10~1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을 위해서 7년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말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의 약자들 뿐 아니라 하나

5) 야모스 2장 6~8절; 미가 2장 1~4절; 예레미야 34장 8~22절; 느헤미야 5장 1~5절 등 참조.

6)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하지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7) 신약에 있어서 희년법의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는, Gert Volschenk & Anereis van Aarde (2002). *A Social Scientific Study of the Significance of the Jubilee in the New Testament*. HTS 58(2)

8) 이들 본문에 관한 설명은, 김병하 (2005). **희년 사상의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34면 이하; 김희권 (2005).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1**. 대한기독교서회, 256면 이하 참조.

9)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주지 못한 팔린 딸을 일컫는다.

님의 피조물인 들짐승들에게도 휴경을 통하여 안식년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도 성경의 희년법과 유사한 관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따금 정의(justice)의 시현으로서 ‘해방(release)’을 선포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자주 혹은 어떠한 주기로 반복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경의 희년법에서와 같은 자동적 주기성을 가진 관습으로서 행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신명기 15장 1~11절에서는 부채탕감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와는 달리 신명기에서 명하는 부채탕감은 매 7년마다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닌 가난한 ‘이웃’ 혹은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 면제의 상대방에 이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3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희년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간 관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5장 12~18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21장 2~11절과 유사한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로 ‘주기성’인데, 출애굽기 21장의 종의 해방 규례는 개인적이라 할 수 있으며, 첩으로 팔린 여종인 ‘아마’의 경우에는 정확히 7년마다 해방된다는 측면이 보이지 않는 반면, 신명기 15장의 종의 해방 규례는 전 국가적으로 또한 주기적으로 7년마다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sup>10)</sup> 이 노예해방에 관한 부분에서도 앞서 살펴본 부채탕감에 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해방의 대상이 되는 노예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로 제한된다(12절). 비록 희년법과 관련된 본문에서 토지반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훼의 선물로서의 ‘땅’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로서,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야훼의 분명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다(김병하, 2005: 40).

레위기 25장은 2~7절의 안식년에 관한 규례, 8~22절의 희년에 관한 규례, 23~34절의 유업(특히 토지)의 회복에 관한 규례, 35~38절의 대부에 관한 규례, 39~55절의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3~34절의 유업의 회복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23절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10) 이것은 신명기 15장 1~11절의 규례와의 구조적인 상관성에서 도출되는 해석이다. 김병하 (2005). 앞의 책. 43면.

내 것임이 아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부분은 가히 ‘모든 희년 법규의 궁극적인 기초’라 할 만할 것이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 야훼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유주라는 것이 모든 희년 법규 시행의 동기가 되는 신학적 바탕이 되는 것이다(김병하, 2005: 50). 레위기의 희년법은, 종의 뜻에 따라 영구히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 휴경년 규례의 동시성과 주기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점,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들을 위한 안식이 아닌(출 23:11)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언급하고 있는 점(레 25:4), 유업 혹은 기업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규례(레 25:23~34)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희년법의 가장 완결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앞서 개관한 모세오경의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갖는 가장 급진적이고도 개혁적인 면모는 바로 그 ‘주기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러한 주기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명기와 레위기 본문에서는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또한 주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체결 당시의 본래적 질서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주기적인 회복성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왕의 시혜칙령들과 유대 지혜문학의 자선의 개념을 넘어서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의 특이성이며 급진성이라 할 수 있다(김병하, 2005: 20).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는 왕이 통치목적상 필요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칙령을 반포한 점에서 그 규범의 실행이 전적으로 왕의 의지에 달려있었던 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년법은 동시성과 주기성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식년과 희년의 도래를 예측하면서 삶을 영위하도록 제한하는 실질적 규범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희년법의 전제로서의 ‘관계성’

희년법의 원리와 정신을 이 시대에 제도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선결적 과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전제’를 확인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도적 구현이라는 것은 곧 현재의 법체계에 대해서 기존의 구성요소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일정한 변경을 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법체계는 일정한 이념적, 역사적, 논리적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년법의 전제와 기존 법체계의 전제

가 어느 정도로 정합(整合)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하나의 법질서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제도, 규칙, 조직 등은 그 체계적 혹은 논리적 연결성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 요소에 가해진 변경은 다른 요소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그 상호작용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때로 개선 혹은 발전으로, 때로 혼동 혹은 후퇴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원리 혹은 정신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에는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와 점검이 거듭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이하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리’라는 측면에서 희년법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땅과 사람을 채무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돌아가도록 하는 ‘무름(redemption)’이 갖는 기능이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5:23)”를 근거로 하는 이 무름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 즉 ‘근족(近族)’ 혹은 ‘고엘’을 통하여 기업을 잃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구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 무를 자가 근족 혹은 고엘로 제한되는 이유는 무름이 바로 각 가족의 유산을 최소한 친족의 소유에 머무르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즉 ‘가구(家口)-친족(clan)-지파’의 층위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친족을 단위주체로 하여 부여된 기업<sup>11)</sup> 그 친족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각 지파의 견고성을 지키려고 했던 희년의 무름에 관한 규례들은 유산의 소유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게 해 주는 주요한 원칙이자(김병하, 2005: 48),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엘에 의한 무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대안이 바로 희년법에 따른 토지반환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스라엘의 지파체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층위로 촘촘하게 엮인 공동체에 편입되도록 하는 언약공동체의 구성원리이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언약(covenant)’은 곧 이들 두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

11) 이 점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본문인 민수기 33:50~34:29 그리고 여호수아 14~19장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2) 레위기 25장 13~17절에 ‘토지반환’의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 때 토지가 일방적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반환의 대가로 희년 후의 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 지불되는 일종의 ‘환매(還買)’이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점은 십계명에서 잘 드러난다. 십계명은 제1계명 내지 제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애굽 땅,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십계명을 통하여 설정된 이중적 관계는 율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법은 법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법의 상위 개념인 ‘언약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장성길, 2012: 76)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회년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일정한 관계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파생된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회년법 역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즉, 회년법은 이 법의 제정자와 수범자 사이, 그리고 각각의 수범자 사이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회년법에 있어서 관계성이 핵심을 이룬다는 것의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회년의 법이 오로지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만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 15:1 이하에 기록된 면제년에 관한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이웃(fellow Israelite)’ 혹은 ‘형제(brothers)’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지만, ‘외국인(foreigner)’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 역시 이스라엘 노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레위기 25:44에 따르면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울 것이며”라고 함으로써 이방인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본문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종을 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기 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종으로 엄하게 부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빚진 자에 대한 빚 독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된 구성원들 역시 서로서로 그 언약에서 비롯된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그러한 관계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관점을 좀

13)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회년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수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

더 확장한다면, 희년법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이상은 자연법적 이성으로부터는 연원(淵源)될 수 없는 사상으로서,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활동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희권, 2004: 136). 희년법의 규범적 정당성은 그 윤리적·도덕적 보편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특별한총적 구원이라는 신학적 특수성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년법의 전제로서의 관계성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연대책임 혹은 공동체 책임의 원리로부터 확장된다. 고엘에 의한 무름 제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언약공동체 구성원간의 연대책임 혹은 공동체 책임의 원리는 비단 친족 혹은 지파 범위 내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 전반으로의 확장성이 있는 연대성이라 할 수 있다(Fager, 1993: 90). 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자선(charity)’의 개념을 명백히 넘어서는 상호책임인 것이다(Fager, 1993: 90). 또한 고엘에 의하여 물려진 토지는 고엘이 아닌 원래의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친족에 의한 토지공유와도 분명히 다르다. 즉, 친족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름이 아니라, 토지를 잃은 친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행사되는 것이다(Fager, 1993: 94).

이처럼 희년법은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로 그 수범자가 제한되며,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희년법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보편적인 윤리적·도덕적 규범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희년법을 제정하고 이를 부여받은 제정자와 수범자의 특징,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라는 관계성으로부터 그 규범의 정당성과 효력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희년법을 오로지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과 더불어 이 규범의 전제가 되는 관계성과 공동체 책임의 원리를 함께 적용할 때 희년법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 3. 희년법과 근대법, 그 전제의 대조

---

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입장에서 구약성서를 읽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임태수, 1991: 117).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희년법의 전제가 되는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국가, 사회, 시장을 틀 지우는 근대법 체계와 회년법 사이에 그 어떠한 접점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방대한 논의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시론(試論)으로서, 회년법과 근대법 각각의 핵심적인 전제를 검토해 보고 양자를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 양자의 접점, 즉 근대법을 근간으로 구성된 오늘의 세계에 회년법이 가질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양자간의 대조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도될 것인데, 하나는 각각의 규범이 상정하는 ‘수범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 (1) 수범자: 공동체와 개인

수범자(受範者)란 일정한 법 혹은 규범에 구속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근대사법<sup>14)</sup>의 수범자는 바로 ‘개인’이다. 이러한 근대법의 수범자는 근대법의 ‘인간상’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15)</sup>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법적 인간상의 변화를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sup>16)</sup>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개인주의 · 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근대사회의 기초법으로서 성립한 근대사법은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14) 근대법 중에서도 회년법에서 규율하는 근로 혹은 노예계약, 소비대차계약 및 이를 위한 담보설정 행위, 토지매매 혹은 임대 등은 모두 ‘사법(私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이므로, 이하에서는 ‘근대사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5) 법에는 일정한 인간상이 겹치기 마련인데, 이 ‘법에 있어서의 인간’에 관하여 지승원 (2007).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법률인**. 이문출판사. 54면 이하의 논의, 특히 59면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음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상에는 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현실적 인간상과 비록 이념의 형태로 법규 배후에 은폐되어 있긴 하지만 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인간상이라는 두 종류의 인간상이 있는 바, 전자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법을 인간에 일치시키는 것이요 후자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토대로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공동체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간을 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쌍방향에서의 접근을 통해 ‘법과 인간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와 같은 설명에 따른다면, 근대법의 수범자로서의 인간상은 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현실적 인간상이라기 보다는 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인간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H. S. Maine (1954). *Ancient Law*, J. M. Dent & Sons Ltd. p100(지승원 (2007). 앞의 책, 69면에서 재인용).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곽윤직, 2002: 30). 즉 근대사법의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Person)’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곽윤직, 2002: 30). 근대법의 인간상은 한 마디로 ‘이성적 인간’인데, 초월적 힘이 아닌 인간 이성에 의해 모든 사물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이미 자유이며,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하다(곽윤직, 2002: 78). 이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근대법의 보편적 인간유형이 마련된 것이다.

근대사법은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 원칙으로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sup>17)</sup> 이 중에서도 특히 고대 혹은 중세와 비교하여 근대의 법에 혁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사유재산권을 도덕적·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근대적 인간이 누리려는 ‘자유’를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로 확장시켜 나가는 논리적 전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sup>18)</sup> 근대사법의 원칙이 재산권이나 계약의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인간상을 ‘경제인’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회년법을 포함하는 율법의 수범자는 이스라엘 공동체<sup>19)</sup>이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가문-가구의 여러 층위의 공동체들로 구성되는데, 이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근대법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은 독립적인 개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

17) 사적 자치의 원칙(혹은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사법의 支柱가 되는 원칙이지만, 이것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 내지 계약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채무의 이행에는 신의성실이 요구된다는 이른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원칙인 것이다. 다른 한편 근대법의 뿌리가 되는 로마법의 발전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로마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고전 후기법에서 폭리행위 및 권리남용금지의 법리가 확립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그 예이다. 특히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관해서는 조규창 (1991). **로마법발전의 미친 기독교의 영향**. 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6, 25면 이하 참조. 폭리규제의 법리에 관해서는 성준호 (2014). 로마법상 ‘막대한 손해’의 성립과 발전 - 로마법에서 교회법에 이르는 폭리규제의 법리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4(1), 108면 이하 참조.

18) 이는 특히 로크의 소유권 사상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술한다.

19)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는 이 언약의 상대방이 ‘야곱의 집(the house of Jacob)’ 과 ‘이스라엘 자손들(the people of Israel)’로 명명되어 있다.

식된다. 율법의 613개 조항 그 어디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창설하거나 확인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율법에 따라 지게 되는 개인의 갖가지 의무조차도 다른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쌍무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율법은 언약공동체에 속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가르침’으로서,<sup>20)</sup>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함의하는 바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도 아니요 사회적 약속 혹은 계약에 대한 위반도 아니요, 언약상대방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자 반역으로서 그 언약을 통하여 형성된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 대가는 언약에의 신실한 구속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된 복(신 28:1~19)의 박탈과 저주(신 28:20~68)이다. 이러한 점에서 율법과 회년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규범력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법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2) 소유권: 토지소유권의 상대성과 절대성

소유의 절대성과 상대성은 물론 일도양단으로 다를 문제가 아니지만, 그 절대성과 상대성 중 어느 것을 소유제도의 근간으로 삼을 것인가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그리고 법질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의 소유 문제는 토지가 갖는 ‘인간생존의 바탕이며 국가존립의 기초’라는 성격(김상용, 1995: 5)으로 인하여, 체제와 질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토지소유권의 귀속과 범위에 관한 역사적 변천을 고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념성, 절대성, 전면성, 단일성, 항구성 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며(이종근, 1995: 104), 이러한 설명은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역사적 보편성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서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대에는 총유적 토지소유권으로서 가족, 씨족, 부족 등의 공동체가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졌으며, 중세에는 토지소유권을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領主가, 후자는 領民이 가지는 분할소유권으로 존재하였다(김상용, 1995: 39).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20) ‘토라(torah)’의 의미는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주로 가르침, 바른 행동지침, 올바른 삶의 道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희권 (2008)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 (출 20:22-23:33), 성결법전 (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법전 (신 12-26)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 4면 이하 참조.

비로소 중세의 신분구속적인 분할소유권을 극복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것이고, 이것은 신성불가침한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토지권이 정립된 배경에는 계몽사상과 자연법사상, 그리고 로마법의 계수가 있다(지승원, 2007: 85).

특히 로크(J. Locke)의 이론은 소유권에 관한 근대의 이해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격(person) 안에 하나의 소유(property)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소유(property)’란 생명, 자유, 재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러한 소유를 보존할 힘을 가지며, 이는 개인의 자연권으로서 神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박창열, 1999: 367). 이처럼 로크가 설명하는 소유권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산물이 아니며, 인간의 자기보존과 생존을 위한 천부의 자연권인 것이다. 태초에 神은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공동이용권을 부여하였으며,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존하고, 그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자가 된다(박창열, 1999: 368). 사람의 육체적 ‘노동’이나 ‘일’은 정확히 그 사람의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를 그 사람이 옮겨버리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혼합시킨 것이며, 그 자신의 것을 거기에 결합시킨 관계로 결국 그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지승원, 2007: 82).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노동한 자 이외의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타인의 공동소유권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한편 희년법에서 발견되는 소유관념은 위에서 살펴본 근대의 소유관념과 정확히 대치되는 것이다. 특히 희년법은 토지의 궁극적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점은 레위기 25:23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부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근족(고엘)에 의한 무름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희년에 이르러 ‘궁극적 고엘인 하나님’에 의하여 원래의 상속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이를 인간의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유업 혹은 기업의 일부로 인간에게 상속된 토지에 대하여 인간은 궁극적 소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이스라엘 각 공동체에게 주어진 토지의 궁극적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희년법은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을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희년법에 있어서 실제

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유권보다는 토지를 이용한 생산적 활동과 그로부터의 수익권이라 할 수 있다. 회년법이 이처럼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의 분리를 일반적 원칙 혹은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회년법상 토지소유권은 성경에서 ‘토지’ 혹은 ‘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관계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이후의 땅의 획득, 상실, 회복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땅에는 언약공동체의 서사(narrative)가 단단히 응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간과 땅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령 혹은 약속, 이를테면 아담에게 주어진 창세기 1:28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창세기 9:1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에 있어서 땅은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땅에 관한 신학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은 선물이자 은혜이며, 때로는 유혹, 책임, 위협인 것이다(브루그만, 2005: 103-138).

언약공동체에 있어서 땅이 갖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레위기 25장 23절)”, 즉 신적 소유권(divine ownership)에 담겨있다. 이로부터 그 파생원리로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 모든 소유는 결국 선물 혹은 은혜로서 주어진 것, 사고 파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즉, 토지와 인간)과 허락되는 것(즉, 토지의 산출물과 인간의 노동력)이 있다는 것, 토지는 오로지 그 산출물로부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sup>21)</sup> 이자를 받고 양식을 꾸어주는 것과 같이 토지와 그 산출물의 일정한 이용방식은 금지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원리들은 여러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근대법의 원리들, 특히 소유권의 절대성, 배타성, 전면성, 항구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 밖에도 토지가 고정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sup>23)</sup> 역시 오

21) 레위기 25장 29~30절에 따르면,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은 무름의 법에 있어서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연간 당해 토지로부터의 소출량에 다음 회년까지의 남은 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22) Burnside, Jonathan (2011). *God, Justice, and Society - Aspects of Law and Legality in the Bible*, Oxford. p.180을 참조하여 저자가 일부 원리를 추가한 것이다.

23) 물론 해마다 토지의 소출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평균적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소출량을 기준

늘날 토지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일단 토지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법률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과 토지와 그 소출을 기반으로 지대 혹은 이자를 통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회년법과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넓히고 있다.

### (3) 소결

이처럼 회년법과 근대법의 전제 사이에는, 특히 그 규범의 수범자,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있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혈연을 구성원리로 하여 형성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년법, 그리고 일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신분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단위로 하는 근대법 각각에 있어서, 구성원간 법률관계를 권리 혹은 의무로서 구성하는 방식이나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 문제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이 맺게 되는 정치적 및 사회적 관계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히 ‘경제체제’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을 토지제도 및 경제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 근대법과 이와는 반대로 토지소유권의 상대성, 즉 주기적으로 또한 전국가적으로 토지상태가 전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회년법은 전혀 다른 사회운영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접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 앞서의 논의에 대한 논리적 귀결은 바로 양자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의 법 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갖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공동체가 규범을 형성하고 전달하며 해석·전달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함의를 주고받기 어려운 서로 다른 고유한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회년법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그 백성에게 유업이자 선물로 부여된 땅’, 그리고 ‘그 땅의 궁극적 소유자로서의 하나님’ 개념은 회년법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주의 깊게 되새겨질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회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제도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고, 결국 실현가

---

으로 토지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능성이 매우 낮은 적용방안으로 귀결될 위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년법의 규범을 그 실천적 의미는 사상(捨象)한 채 신학적 혹은 상징적 의미만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약속된 기업의 물리적·실재적 실체인 ‘가나안 땅’이 이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주어졌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취한 하나님 나라가 내세 혹은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그의 구체적 사역을 통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 현실적으로 도래하였듯이, 회년법에서 요구하는 변혁의 규범들 역시 지극히 실천적인 규범으로서 시대적 모순을 과감하게 돌파하도록 하는 사회적 상상력의 원천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영원한 유업을 상기하며 갈구하도록 하는 이중적 기능을 갖는 제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회년법에 있어서 ‘땅’이 갖는 의미는 ‘기업’ 혹은 ‘유업’의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영생’ 혹은 ‘구원’을 가리키게 된다.<sup>24)</sup>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로서 ‘기업’이 갖는 의의, 그리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바로 그 언약의 맥락 속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율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창세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을 통하여 회복한 기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회년법과 근대법이 그 전제와 근본원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대립한다는 이상의 주장은 근대법을 기초로 구축된 오늘의 법현실에 회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근본에서부터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뿌리 깊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에, 근대법의 전제와 근본원리에 대한 전복적 회의는 충분히 유의미하다. 이것은 근대법의 전제들, 즉 인간이 그가 속한 공동체 및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독립되고 단절된 개체라는 전제,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서서 회년법이 오늘의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상실된 관계성의 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관계성은 인간이 다른 인간, 즉 그가 속한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자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전면적 관계의 총체를 가리킬 것인데, 여기에서 돌봄과 책임을 주고 받는 관계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회년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

24) 마 25:34; 고전 6:10; 갈 5:21; 막 9:45-47; 10: 25-26 참조.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도모할 수 있는 희년법의 실천은 바로 그 전제의 ‘모방적 구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모방’이 의미하는 것은 희년법과 근대법이 그 본성상 서로 정합(整合)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만 법과 제도를 통한 타율적 구속을 통하여 현상적 혹은 결과적 차원에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통전적(統全的) 삶을 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이 자율적으로 복원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과 법의 형성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계성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간 돌봄과 책임의 원리를 법과 정책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거나, 모든 경제활동이 이윤추구를 동기로 한다는 경제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거부하고 돌봄과 책임의 동기로 운용되는 다양한 대안적 제도들을 현행의 법질서 내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그 논의가 활력을 띠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연대와 책임을 핵심적 원리로 삼는 희년법이 구체적인 제도로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 IV.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희년법 원리의 실천 가능성

### 1. 기본소득의 의미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 및 주기적으로 교부되는 현금으로 정의된다.<sup>25)26)</sup> 기본소득의 목적은 ‘실질적 자유의 실현’에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sup>27)</sup> 이는 가구의 경제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

25)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서 제시하는 정의이다.

26) 영국의 경제학자 조지 콜(1889-1959)이 처음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기본소득의 철학적 체계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학자로서 필리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현진 역.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Philippe van Parijs.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서울: 후마니타스.

다는 점에서 ‘개인적’ 수급권이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그 조건으로서 노동 혹은 노동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다(파레이스·판데르보흐트, 2018: 31). 먼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급부가 제공된다는 개인성 혹은 개별성은 사회보장 제도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가구 내에서 자원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히 젠더 평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보편성과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개별성과 보편성, 이 두 개념은 기본소득이 시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120). 그밖에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의 하나로 정기성을 꼽기도 하는데,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의 지급 간격 혹은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논자마다 다르게 주장되고 있다.<sup>28)</sup> 기본소득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중요한데, 수급자가 이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하에 구체적인 제도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기본소득의 정의 요소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는 제도들도 있다. 예컨대,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sup>29)</sup> 참여소득,<sup>30)</sup>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up>31)</sup> 사회수당<sup>32)</sup> 등은 일부 기본소득의 정의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한편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소득의 개념적 특징들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와 구별점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노동’과의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은 과거 충분한 기간 동안에 노동을 통하여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현재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 혹은 노동의지를 조

28) 예컨대, ‘사회적 지분급여(social stakeholder grants)’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시금으로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9)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일정 세율의 조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30)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활동들, 예컨대 자원봉사, 가사, 훈련 등을 하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1) 모든 시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국가가 일정액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32) 아동, 노인, 청년 등 생애주기의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으로 근로연계복지가 제공된다. 그밖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산 혹은 소득 수준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는 사회부조가 있다. 이들 노동을 중심으로 범주화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소득과 그 본질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의에 가장 충실하면서 실제로 제도화에 성공한 예는 바로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펀드이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진바 있는데, 그 결실로 1976년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알래스카 영구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sup>33)</sup> 이 알래스카 영구펀드는 석유수입을 기반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지급되는 배당금 형태의 종신기금이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1년 이상 알래스카주에 거주한 시민이라면 무조건 배당금을 받는다. 2015년에는 1인당 2,072달러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알래스카 주의 예에 비견할만한 제도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는 유의미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미비아,<sup>34)</sup>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 브라질의 Bolsa Familie 등이 주목할 만한 예이다. 특히, 스위스에서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자원마련이나 이민자의 대량유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지만,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제도화의 가능성을 가시화하였다는 성과를 남겼다. 2017년에는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스코틀랜드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33)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낸 미국 공화당 출신인 Jay Hammond는 1970년대 중반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루도만(Prudhoe Bay) 유전을 주정부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하지만 그는 석유 채취에서 발생한 엄청난 부가 현세대의 알래스카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말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해먼드 주지사는 석유수입의 일부를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그 부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 보존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1976년 주 헌법을 수정하여 ‘알래스카 영구펀드’가 세워진 것이다(파레이스·판데르보흐트, 2018: 217-8).

34)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그 성과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2008년 1월부터 오미타라와 오토지베로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단 1년만에 식량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20%에서 40%로 증가하였고, 영양실조 아동 비율이 42%에서 17%로 줄어들었다.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비율이 한 달에 12회에서 6회로 감소하였고, 빈곤 관련 범죄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기본소득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평균 267달러에서 308달러로 증가하였고, 특히 5분의 분배율에서 가장 극빈한 20%의 계층은 기본소득 급여를 제외하고 측정한 평균소득이 약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143-4).

## 2. 기본소득의 윤리적·신학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것이 그 보편성 및 무조건성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둘째, 이것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셋째, 이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논제는 주로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을 문제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논제는 앞서의 것과 연결되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논제인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라는 선명한 원칙 앞에서 기본소득을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노동윤리’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윤리적·신학적 정당화는 ‘노동과 소득의 관계’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로 인하여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계가 약화됨을 우려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를 통하여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계를 끊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과 소득의 관계 문제를 규명하는 일은 철학, 정치, 경제, 신학 등 여러 차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노동윤리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배경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최근 기본소득 제도가 주목을 받는 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이래 산업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인간의 노동이었다. 생산이 중심이 되었던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이것은 부가 축적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노동은 찬미의 대상이 되고, 게으름은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근면한 노동은 다른 한편 종교적인 미덕이기도 하였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경제사회사상에서도 기독교적 노동윤리는 매우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칼빈의 노동관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정세열, 2016: 43). 또한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

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하여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된다. 인간의 노동과 임금에 영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과 노동을 긴밀하게 연결한 것은 중세신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이면에는 실업을 사회악으로 인식하고,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비약적 기술혁신이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고용과 실업에 미칠 효과, 즉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하여 저숙련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 숙련 노동까지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sup>35)</sup>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노동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은 일찍부터 존재했었다(Jeremy Rifkin, 1994). 물론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도 단기적인 노동력 대체효과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오히려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궁극적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정혁, 2017: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있어서 노동의 의미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상품화된 노동력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었지만,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창출된 가치가 분배되는데 있어서도 노동력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드는 반면, 대중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여 활용한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몫이 집중된다는 것이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37-9).<sup>36)</sup>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치의 생산 및 분배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다면, 실업의 문제는 단지 일시적·경기적(景氣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장기적·구조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35)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에 따르면,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함으로써 2010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겠지만,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노동 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WEF, 2016: 13).

36)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새로운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빅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과정을 통하여 창출된 ‘가치’와 ‘노동’ 사이의 연결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노동’과 ‘소득’의 연결성도 현저히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과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즉 노동에 소득이 상응하지 않는 상황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노동 그 자체를 윤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기술혁신은 일자리의 양적 감소 뿐 아니라 생산양식의 변화도 가져왔는데, 노동의 시간과 장소가 탈집중화되고 노동과 비노동간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노동관계가 유연화되고 노동자간 연대와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54). 근대의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 균형이 깨어지고 자본은 노동자의 동의와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국 노동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결정되는 임금 내지 소득은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되기 어렵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은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을 상당히 강화하는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최근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을 위한 주장과 실험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3. 희년법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제도의 의의

희년법의 원리인 공동체적 관계성과 연대의식은 복지국가의 핵심가치와도 맥이 닿아 있다. 복지국가의 핵심가치는 자유, 평등, 연대인데, 즉 자유에 대한 권리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연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상호책임을 위해 집단적 자기이익의 관점을 초월하고, 연대적 재정충당방식을 선호하며, 경쟁보다 협동, 권리보다 의무, 개인보다 공동체, 자조보다 의타심을 강조한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50). 한편 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있어서 그 중심적 지위를 상실한 오늘날, 노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복지체제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기존의 복지국가는 노동과 연계된 복지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집단과 불가능한 집단을 구분하여, 전자의 집단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

혹은 보장으로서의 급여를 제공하고, 후자의 집단에게는 노동집단으로부터 마련한 재원에 의존하는 최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온 것이다. 하지만 많은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화, 탈정형화, 개인화 등의 현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화·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대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방식과 생산양식에 있어서,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노동윤리’는 더 이상 규범으로서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성에 비추어 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회년법의 기초는 바로 자격을 묻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유업 혹은 기업에 있다. 이것은 회년법의 초기조건이 되며, 회년법의 내용이 되는 규범들도 전반적으로 이 유업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회년법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본소득 제도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윤리적·신학적 정당화는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회년법의 전제로서의 관계성에 주목한다면, ‘유업이자 선물로서 주어진 공동의 자산에 대한 권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여지가 생긴다. 언약공동체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땅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었던 것이지, 노동한 자에게만 혹은 노동한 만큼만 부여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오늘날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노동에 대한 무의지 혹은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일하고 싶어도 혹은 일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구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별, 나이, 재산, 장애 등 모든 조건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업의 계승자가 되고 공동체적 돌봄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회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 이 정신에 뚜렷하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년법의 돌봄의 정신이 비단 노동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만 국한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언약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며, 이에 근거한 유업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봄의 정신은 공동

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비단 성경, 특히 회년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도입의 주장 근거로서 인류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을 일부가 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언약백성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원에 대한 신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타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긍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노동의 의무, 특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삶의 근간이 되는 유업에 대한 지분이 박탈되는 그런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sup>37)</sup> 유업에 대한 권리가 노동의 의무에 앞선다는 것이 성경, 특히 회년법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노동의 의무 혹은 윤리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반박하는 주장은 정작 자본가들이 노동 없이 자본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일종의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설사 노동윤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부여되는 노동의 ‘의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차원에 존재하는 의무인 것이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이 박탈되는, 일종의 제재가 따르는 의무는 아닌 것이다.

## V. 결론

회년법과 근대법은 그 전제와 근본원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대립된다는 본고의 논증은 근대법을 기초로 구축된 법현실에 율법과 회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주었다 하겠다. 그간에 꾸준히 이루어진 성경적 토지제도를 제도화 혹은 입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도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목도되는 법·제도 및 그 적용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성경의 회년법이 제시하는 혁명적 메시지는 오히려 그 전제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채탕감, 노예해방, 토지반환과 같은 회년법의 요구를 내용적으로 실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회년법의 전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및

37) 물론 게으름과 나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유업을 박탈당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관계성’,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연대와 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희년법은 그 제정자와 수범자, 그리고 수범자 상호간의 ‘관계성’을 전제로, 공동체적 연대, 책임, 돌봄을 규범화 혹은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의 근대법이 그 전제에 있어서 희년법과 접점을 모색하기 어려울만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근대법에 정초한 이 시대의 병폐는 그 전제를 전복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법체계가 갖는 근본적 한계에 도전하고 있기에, 그 상상력의 근본성과 개혁성에 있어서 희년법을 투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근대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구성원간 공동체적 연대성, 그리고 전인류의 공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상대성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과 고민의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기본소득의 도입에 있어서도, 희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근본적 상이 혹은 충돌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법체제, 특히 사회복지체제와 정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동윤리와도 긴장이 발생한다. 이 또한 희년법의 제도적 실천이 주는 어려움의 한 가지 양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윤리 혹은 규범에 대한 철저한 연구, 동시에 이 시대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법체계가 근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대법의 원리로 구성되고 그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는 사회의 실상이 어떠한지는 역사적으로 입증된바 있기에, 근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현대적 수정원리’가 각 법 분야에서 진지하게 모색된바 있으며, 이미 우리의 현실을 규율하는 많은 규범들에 이러한 새로운 원리들이 수용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계약자유와 원칙을 보완하는 계약공정의 원칙이고,<sup>38)</sup> 비록 사인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성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공법적 개입으로서 노동법, 소비자법,

38) 계약자유와의 관계에서 계약공정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권오승 (2006).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77면 이하 참조.

공정거래법, 임대차법, 거래공정화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대법의 근간이 되는 원리들에 대하여 국가의 입법적 혹은 사법적 간섭을 통해 일정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근대법의 갖는 근본적 한계를 증명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근대법의 전제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관계들, 특히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혹은 단절된 개체라는 전제,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서서 희년법이 오늘의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상실된 관계성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 관계성은 인간이 다른 인간, 그가 속한 가족,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자연 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전면적 관계의 총체를 가리킬 것인데, 여기에서 돌봄과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도록 하는 것에 희년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곽윤직 (2002).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 [Gwak, Y. J. (2002). *Civil Law*(7th Edition). Park-Young-Sa.]
- 권오승 (2006).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Kwon, O. S. (2006). *Market Economy and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교성 · 백승호 · 서정희 · 이승운 (2018). **기본소득이 온다 -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 [Kim, K. S. et al. (2018). *Baisc Income Comes - New Imagination for Distribution*. Social Criticism Academy.]
- 김근주 외 (2012).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 [Kim, G. J. et al. (2012).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김병하 (2005). **희년 사상의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 [Kim, B. H. (2005). *Spirituality of Jubilee Thoughts*. Dae-Han-Gi-Dog-Gyo-Seo-Hoe.]
- 김상용 (1995). **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 [Kim, S. Y. (1995). *Legal Thought on Land Ownership*. Min-Eum-Sa.]
- 김선종 (2011). 레위기 25장의 형성 - 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 [Kim, S. J. (2011). Formation of Chapter 25 Leviticus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Sabbatical and Jubilee. *Jang-Sin-Non-Dan*, 40.]
- 김희권 (2004). 구약성서의 희년사상과 사회윤리적 함의. **신학사상**, 127.
- [Kim, H. K. (2004). Jubilee Thoughts in Old Testament and Its Socio-Ethical Implication. *Sin-Hag-Sa-Sang*, 127.]
- 김희권 (2005).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1**. 대한기독교서회.
- [Kim, H. K. (2005). *The Pentateuch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m of God Theology 1*. Dae-Han-Gi-Dog-Gyo-Seo-Hoe.]
- 김희권 (2006).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2**. 대한기독교서회.
- [Kim, H. K. (2006). *The Pentateuch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m of God Theology 2*. Dae-Han-Gi-Dog-Gyo-Seo-Hoe.]
- 김희권 (2008).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법전(신 12-26)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Kim, H. K. (2008). Laws in Old Testament - Covenant Law(Exodus 20:22-23:33), Snactification Law(Leviticus 17-26), and Deuteronomy Law(Deuteronomy 12-26):

- Decalogue. *Beob-Hag-Non-Chong*, 19.]
- 남기업 (2012). **희년과 한국사회**. 김근주 외.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Nam, G. Y. (2012). *Jubilee and Korean Society*. Kim, G. J. et al.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박창열 (1999). 근대 자연권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연구(한국경제학회)**, 47(3).  
[Park. C. Y. (1999). Modern Thoughts on Natural Right and Economy Liberalism. *Gyeong-Je-Hag-Yeon-Gu*, 47(3).]
- 박형준 (2018).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미래 1 -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 ecommons (지식공유지대. <http://ecommons.or.kr>).  
[Park. H. J. (2018).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Basic Income 1 - The History of Basic Income*. ecommons(<http://ecommons.or.kr>)]
- 성준호 (2014). 로마법상 ‘막대한 손해’의 성립과 발전 - 로마법에서 교회법에 이르는 폭리규제의 법리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4(1).  
[Seoung, J. H. (2014).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normous Damage’ in Roman Law - With a Focus on Regulation of Profiteering from Roman Law to Cannon Law. *Gong-Gong-Sa-Hoe-Yeon-Gu*, 4(1).]
- 신현우 (2012). 신약성경에는 희년법이 없는가?.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Shin, H. W. (2012). Is't There Jubilee Law in New Testament?. Kim, G. J. et al.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양희송 (2016). **이매진 주빌리**. 메디치.  
[Yang, H. S. (2016). *Imagine Jubilee*. Medichi.]
- 이영호 역 (1996). **노동의 종말**. Jeremy Rifkin (1994). *The End of Work -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서울: 민음사.
- 이종근 (1995). 토지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5.  
[Lee, J. G. (1995). Study on the Concept of Land Ownership - With a Focus on Historical Development. *Bu-Dong-Sanj-Jeong-Chaeg-Yeon-Gu*, 5.]
- 이종근 (1995). 히브리 성서의 희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 제도. **구약논단**, 1.  
[Lee, J. G. (1995). Jubilee in Hebrew Bible and Misharum in Mesopotamia. *Gu-Yag-Non-Dan*, 1.]
- 임태수 (1991). 희년의 의미와 그 현대적 적용. **기독교사상**, 35(11).  
[Lim, T. S. (1991). Meaning of Jubilee and Its Modern Application. *Gi-Dog-Gyo-Sa-Sang*, 35(11).]

- 장성길 (2012). 구약성경에 나타난 희년법.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홍성사.  
[Chang, S. G. (2012). Jubilee Law in Old Testament. Kim, G. J. et al. Jubilee, Korean Society, Kingdom of God. Hong-Sung-Sa.]
- 장진광 (1994). **희년과 복음**. 두란노.  
[Chang, J. G. (1994). *Jubilee and Gospel*. Duranno.]
- 정세열 (2016).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 종교개혁과 경제**. SFC.  
[Cheong, S. Y. (2016). *Dialogue with the Reformers - Reformation and Economy*. SFC.]
- 정진원 역 (2005). **성경이 말하는 땅 - 선물·약속·도전의 장소**. Water Brueggemann. (2002). *The Land -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정 혁 (2017).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heong, H. (2017).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조규창 (1991). 로마법발전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6.  
[Cho, G. C. (1991). Influence of Christian on the Development of Roman Law. *Beo-Hag-Non-Jib*, 26.]
- 조현진 역.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Philippe van Parijs.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후마니타스.
- 지승원 (2007).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법률인**. 이문출판사.  
[Ji, S. W. (2007). *Lawyers, A Human Pursuing Meaning*. I-Mun-Chul-Pan-Sa.]
- Bunside, Jonathan (2011). *God, Justice, and Society - Aspects of Law and Legality in the Bible*, Oxford.
- Georgy, Henry (1981). *Progress and Poverty -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 Gert Volschenk & Anereis van Aarde (2002). A Social Scientific Study of the Significance of the Jubilee in the New Testament. *HTS*, 58(2).
- Jeffrey A. Fager (1993). *Land Tenure and the Biblical Jubilee - Uncovering Hebrew Ethics through the Sociology of Knowledge*. JSOT Press.
- World Economic Forum (WEF) (2016). *The Future of Jobs*.

논문초록

## 회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조혜신 (한동대학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 즉 실업, 부채, 빈곤, 착취 등을 보건대, 이를 타개할 영감의 원천으로서 성경의 회년법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회년법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종래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좀 더 실효적이면서도 적실하게 우리의 법과 제도에 회년법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회년법은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로 그 수범자가 제한되며, 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부여받은 제정자와 수범자의 특징,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라는 관계성으로부터 그 규범의 정당성과 효력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년법을 오로지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과 더불어 이 규범의 전제가 되는 관계성과 공동체 책임의 원리를 함께 적용할 때 회년법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회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접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 앞서의 논의에 대한 논리적 귀결은 바로 양자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년법이 오늘의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상실된 관계성의 복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관계성은 인간이 다른 인간, 그가 속한 가족,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 자연 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전면적 관계의 총체를 가리킬 것인데, 여기에서 돌봄과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도록 하는 것에 회년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회년법은 그 제정자와 수범자, 그리고 수범자 상호간의 ‘관계성’을 전제로, 공동체적 연대, 책임, 돌봄을 규범화 혹은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의 근대법이 그 전제에 있어서 회년법과 접점을 모색하기 어려울만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근대법에 정초한 이 시대의 병폐는 그 전제를 전복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기

존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법체계가 갖는 근본적 한계에 도전하고 있기에, 그 상상력의 근본성과 개혁성에 있어서 회년법을 투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근대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구성원간 공동체적 연대성, 그리고 전인류의 공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상대성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과 고민의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기본소득의 도입에 있어서도, 회년법과 근대법 사이의 근본적 상이 혹은 충돌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법체계, 특히 사회복지체제와 정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노동윤리와도 긴장이 발생한다. 이 또한 회년법의 제도적 실천이 주는 어려움의 한 가지 양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윤리 혹은 규범에 대한 철저한 연구, 동시에 이 시대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회년법, 근대법, 모세오경, 언약, 토지소유권, 기본소득